



환매조건부채권 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하 ‘조건부채권매도’라 한다)업무를 영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매조건부채권(이하 ‘조건부채권’이라 한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래 상대방(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조건부채권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 【조건부채권매도의 내용】

- ① 조건부채권매도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조건부채권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필요 시 액면을 분할할 수 있다.
- ③ 분할매도 시 최저 한도액은 50,000원으로 하고 10,000원 단위로 초과할 수 있다.

제3조 【조건부채권매도의 성립 등】

- ① 조건부채권매도는 고객이 거래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 계좌를 설정한 후, 매수대금을 납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통장을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고객은 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우체국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환매수】

고객은 약정기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환매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환매수 가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하되, 10원 단위로(10원미만 절사) 계산한다.
 - 환매수가격 = 조건부채권매도가격 × (1 + 약정일수/365 × 조건부채권매도이율)
- ② 조건부채권매도 약정기간중에 매도된 채권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원천징수차액을 차감)은 제1항의 환매 수 가격에서 정산한다.
- ③ 제1항의 산식 중 조건부채권매도이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 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제6조 【이율의 게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 이율표를 고시한 후 우체국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건부채권매도에 있어서 약정기일 전후에 환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중도환매수이율은 환매일수일까지의 해당 기간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 【매도채권의 보관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위탁을 받아 매도채권을 보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수 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된 매매계산서와 통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매매계산서는 환매수일이 확정된 경우 교부할 수 있으며, 통장에 환매수가격 및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기간 중에 받은 수입이자는 동 채권이 환매수일 까지 이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매도채권의 종목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채권을 보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 환매수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중인 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계좌의 폐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잔고가 '0'이 된 날부터 6월 이 경과된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1조 【인감의 신고 등】

- ① 고객은 조건부채권매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인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은 통장이나 신고인감을 분실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그 사항을 우체국에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객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약관을 우체국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법규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체신관서의 국채·공채 매도 증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양도 등의 제한】

고객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 유증판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특약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